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61,671,783	1,994,831,640
일반회계	8,069,051,483	1,613,810,296
특별회계	3,192,620,300	381,021,344
공기업특별회계	1,254,265,917	187,185,905
수도사업특별회계	414,982,783	41,498,27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1,689,998	22,169,00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7,593,136	123,518,627
기타특별회계	1,938,354,383	193,835,43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9,778,959	1,977,896
소방특별회계	287,502,534	28,750,25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6,735,732	61,673,57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89,558,525	28,955,853
수질개선특별회계	6,088,021	608,802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475,304	147,53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96,400	289,64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125,800	1,112,58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806,859	680,68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002,910	4,100,29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5,761,096	5,576,1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46,906,915	34,690,692
도시개발특별회계	6,346,944	634,694
기반시설특별회계	2,423,596	242,36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553,671	1,655,36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27,391,117	22,739,11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676,01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복구 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